515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 2012.12.13.
개정 2013.8.2.
개정 2014.7.14.
개정 2015.1.19.
개정 2016.1.18.
개정 2016.12.22.
개정 2017.6.2.
개정 2018.1.15.
개정 2019.12.11.
개정 2020.1.1.

제1장 개 요

제1조(자산운용지침 개요)

①본 자산운용지침은 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에 의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향 등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타 외부기관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모든 조직 및 사람에게 적용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5>

②본 자산운용지침은 기금의 관리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작성하고,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되며, 1년 단위로 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06.02.> <개정 2018.1.15>

제2조(자산운용지침의 목적)

본 자산운용지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기금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투자정책, 투자목표 및 투자지침 제시
2. 자산운용의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 확립
3. 투자정책, 투자목표 및 투자지침 그리고 성과평가기준 등을 내부관리자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
4. 자산운용 지배구조 등 내부 운용관련 변화에 관련 없이 자산운용의 일관성 및 독립성 유지

제3조(기금의 개요)

①기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3년 문화예술진흥법 제 17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 용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의해 문화예술

의 창작과 보급, 민족 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다.

②기금의 주된 재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이며, 2018년말 현재 운용규모는 744억 원이다.(잔액기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치액 제외) <개정 2014.7.14.> <개정 2019.12.11.>

제2장 자산운용관련 법규

제4조(자산운용 관련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가 규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에 의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한다.

제3장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제5조(자산운용의 목적)

①기금의 자산운용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기금의 관리주체인 위원회는 이러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확한 자금수지분석을 통해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이외의 여유자금은 중장기로 운용하여 기금의 운용수익이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다.

제6조(자산운용 원칙)

기금의 자산은 국가재정법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에 의거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① 운용하는 자금의 투자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운용한다.(안정성 원칙)

② 기금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위험대비 많은 이익을 추구하여 기금의 확대조성에 기여한다. (수익성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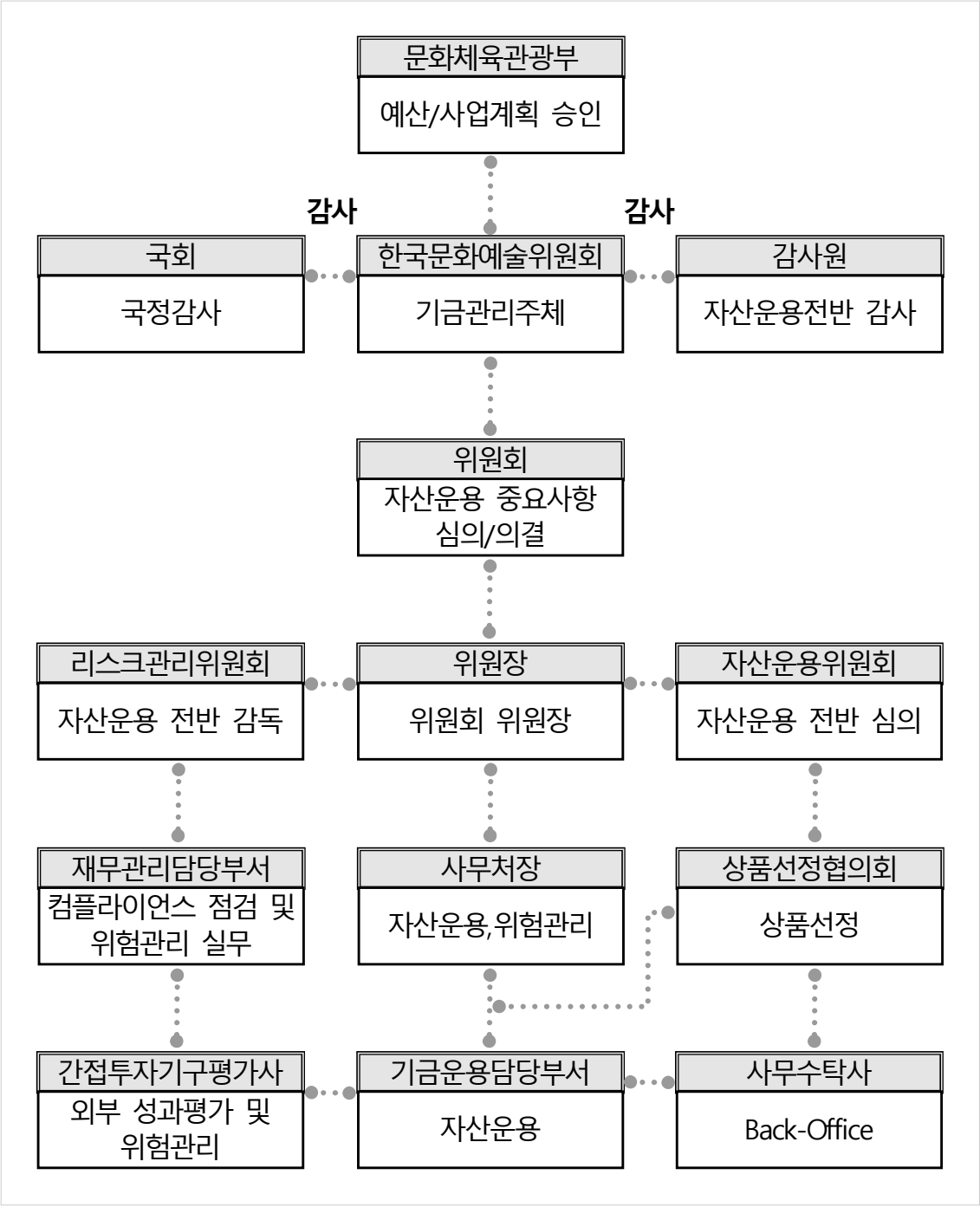
③정부정책에 부합하도록 자산을 운용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다. (공공성 원칙)

④예상치 못한 사업 지출 및 수입 감소에 대비하여 적정 유동성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자산운용 계획에 반영한다. (유동성 원칙)

제4장 자산운용 체계

제7조(자산운용의 의사결정 체계)

기금의 자산운용은 자산운용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개정 2019.12.11.>



제8조(자산운용의 조직과 역할)

① 위원회 <개정 2018.1.15>

1.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로서 기금전반에 대해 최종적인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8.1.15>
2.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위원회의

직무)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15>

-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5>

②자산운용위원회

1. 기금은 자산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에 근거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에 관한 전반사항들의 심의한다.
2.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인 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합니다. 또한 선임된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3. 자산운용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국가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4. 자산운용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개최 할 수 있다.
5. 위원의 선임기준, 회의 소집 및 통지, 수당의 지급 등 기타 자산운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 운영기준”을 별도로 두어 관리하고 있다.

③리스크관리위원회

1. 기금은 자산운용상 발생가능한 리스크의 관리 및 자산운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어 실질적인 감독 및 견제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운용에 환류토록 하여야 한다.
2.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기획담당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위원장은 리스크관리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2.22.>
3.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4.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개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11.>

- 리스크관리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시장리스크 관련 허용위험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성과평가에 관한 검토
- 그 밖에 자산운용 전반에 걸쳐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5. 위원의 선임기준, 회의 소집 및 통지, 수당의 지급 등 기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기준”을 별도로 두어 관리한다.

④자산운용부서

자산운용부서는 기금운용의 주무부서인 문화예술후원센터내에 위치하며, 자산운용 전담인력 2인으로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및 월간 자산운용계획 및 운용전략 수립
2. 자산배분계획(안)의 수립
3. 목표수익률 설정
4. 금융기관 선정 및 평가
5. 금융기관예치 및 유가증권투자
6. 자산운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재무관리담당부서 <개정 2019.12.11.>

재무관리담당부서 자산운용상 발생가능한 리스크의 관리 및 자산운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실질적인 감독 및 견제기능을 실시간으로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2. 시장리스크와 관련된 허용위험한도 설정 및 모니터링
3. 자산운용의 성과평가 검토
4.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간자금운용계획의 이행사항 점검 및 감사
6. 자산운용 업무상의 위법 및 위규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감사
7. 기타 자산운용 업무 관련 감사

⑥ 운용실무협의회

운용실무협의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고 시장상황을 여러 각도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협의체 기구로써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판매사, 운용사, 평가가 각 1인 및 기금운용역 2인으로 구성한다. 운용실무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분석
2. 월별 예치상품에 대한 방향 결정

3. 타기관 자금흐름 동향 파악

⑦상품선정협의회

1. 시장상황 및 이슈, 내부 자금상황 등을 토대로 하여 실질적인 자금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상품을 선정하는 기구로서, 기금의 내부인력 3인으로 구성한다.
2. 위험이 내재된 투자상품의 투자 의사결정시 상품선정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상품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상품의 1차 제안서 최종심의
   - 2차 구술심사 시행 후 상품선정

제5장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제9조(목표수익률)

①기금의 목표수익률은 기금의 목적 또는 자산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산배분에 앞서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지표로서 위원회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가치 보존 이상의 수익률을 말한다. 따라서 목표수익률의 개념을 “전략적 자산배분을 위한 제약조건이며, 전략적 자산배분(안)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수익률”로 정의하고 있다.

②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고려하기 위해 ‘19년도 기금의 목표수익률은 2.37%로 설정하며,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의 목표수익률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사전적으로 설정한다. <개정 2014.7.14.> <개정 2016.12.22.> <개정 2017.06.02.> <개정 2019.12.11.>

1. 단기자금(1.88%) : 현금성 및 유동성자산 예상금리를 목표비중으로 가중 <개정 2014.7.14.> <개정 2016.12.22.> <개정 2017.06.02.> <개정 2019.12.11.>
   - 현금성 : MMF예상수익률 (기준금리와의 회귀분석 후 예상 기준금리 적용)
   - 유동성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정기예금 예상금리 (금리모형)
2. 중장기자금(2.68%) : 중장기자산이 달성해야하는 요구수익률 + α <개정 2013.8.2.> <개정 2014.7.14.> <개정 2016.12.22.> <개정 2017.06.02.> <개정 2019.12.11.>
   - 중장기자산이 달성해야하는 요구수익률(2.68%) <개정 2019.12.11.>
   - 삭제 <개정 2013.8.2.><개정 2016.12.22.> <개정 2017.06.02>
   - 초과 목표수익률(α): 문예진흥기금의 대체자산 중 대부분이 정책적 목적에 투자된 상품으로 일부 상품의 경우는 무수익자산임. 따라서 추가적인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지 않음. 단, 과거 부실자산에서 회수가 예상되는 수익금액 등은 목표수익률에 반영할 수 있음 <신설 2013.8.2.> <개정 2016.12.22.> <개정 2017.06.02.> <개정 2019.12.11.>
3. 기금전체 :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 시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의 운용비율을 가중하여 2.37%를 기금 전체의 연간 목표수익률 설정 <신설 2013.8.2.><개정 2016.12.22.> <개정 2017.06.02.> <개정 2019.12.11.>

③ 목표수익률은 금융시장 및 운용 프로세스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허용위험한도)

① 기금은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시장리스크의 연간 총 허용위험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금의 허용위험한도 측정대상 자산 및 측정방법은 “리스크관리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 허용위험한도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및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한다.

② 시장위험과 관련한 허용위험한도는 하락위험(Shortfall Risk : 특정한 수익률에 미달할 가능성을 말하여, 기금은 자금운용으로 인해 원금을 미달할 가능성으로 정의함)한도를 충족시키는 자산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시장VaR(Market Value at Risk : 주어진 신뢰수준에서 목표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값으로 관리한다.

문예진흥기금의 단기자금은 “1년간 Shortfall Risk(원금) ≤ 1%"를 충족하는 운용상품을 선택하며, 중장기 자금은 ”1년간의 Shortfall Risk(원금) ≤ 5%“를 만족하는 운용상품을 선택한다. 전체자산의 허용위험한도는 포트폴리오의 1년간 누적투자수익률이 0%를 넘지 못할 확률을 3% 이내에서 통제한다.

시장위험에 대한 최대 허용위험한도는 투자 상품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95% 신뢰수준의 Market VaR를 측정하여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2019년 문예진흥기금의 시장위험(Market VaR) 허용위험한도는 단기자금의 경우 5.57억원(0.91%), 중장기자금 36.69억원(3.78%)으로 전체자금의 최대손실한도는 42.26억원(2.67%)이다. <개정 2013.8.2.> <개정 2014.7.14.> <개정 2017.06.02.> <개정 2019.12.11.>

③ 그 외 신용위험과 운영위험 등의 허용위험한도 설정은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산운용위원회 및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2.>

제6장 자금수지 분석 및 계획

제11조(운용자금의 분류)

기금의 운용자금은 아래와 같이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7.06.02>

자금분류		자금내용
단기자금	현금성자금	· 자금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금 · 만기 3개월 미만의 자금
	유동성자금	· 유동성을 일부 보충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자금 ·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자금
중장기자금		· 자금운용수익의 제고를 위해 1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 · 장기자금 = 총운용자금 - 단기자금

제12조(자금수지의 항목)

①기금은 자금의 현금흐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금을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으로 구분한다.

②수입항목은 기금운용수익, 기부금, 기타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항목은 기금관리비, 사업운영비, 경상사업비 등으로 구성한다.

제13조(적정유동성 규모 산정)

과다한 단기자금 보유로 인한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하여 적정 유동성산정모델을 통해 자금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다.

①자금유출입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금수지항목을 수입과 지출항목으로 구분하고 수입·지출의 규모, 시기, 속성 등을 분석하여 각 항목의 특성에 맞는 예측방법을 결정한 후 미래에 발생할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의 규모와 시기를 산정하며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 기금의 과거 자금 유입 및 지출 패턴 분석, 자금수지의 추세 및 패턴 분석을 통해 자금의 특성을 파악
2. 2단계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비하여 95%의 확률로 준비해야하는 적정 유동성 규모를 계획대비 실적의 수지차 분석을 통해 목표 수준(Target Level) 설정
3. 3단계 : 여유자금 중 적정 유동성 규모와 사업대기성 단기자금 규모를 제외한 자금을 중장기 자금으로 운용
4. 4단계 : 당해년도 사업환경을 고려해 적정 유동성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그 규모를 자산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②기금이 설정한 목표수준인 95% 하에서의 단기자금 규모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약 411억원으로 추정한다.<개정 2017.06.02.> <개정 2019.12.11.>

[2019년도 월별 예상편잔 추정]

(단위 : 억원, %)

구분	단기자금			중장기	전체
	현금성	유동성	소계		
1월	701	155	856	385	1,241
2월	462	155	617	385	1,001
3월	851	155	1006	385	1,390
4월	200	154	354	385	739
5월	200	154	354	1,047	1,401
6월	509	154	663	1,210	1,874
7월	709	261	970	1,310	2,280
8월	400	261	661	1,310	1,970
9월	332	261	593	1,310	1,902
10월	200	261	461	1,310	1,770
11월	200	160	360	1,310	1,669
12월	200	154	354	1,310	1,664
평잔	424	190	614	971	1,586

비중	26.7	12.0	38.7	61.3	100

제7장 자산배분정책

제14조 (투자대상자산)

①기금은 문예진흥기금 관리규정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주식, 채권을 비롯한 모든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 ※ 문예진흥기금 관리규정 제7조 (기금의 운용)
> ③ 적립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 1. 금융기관에의 예치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및 제5조(파생상품)에 명시된 금융투자상품의 매입
> 3. 부동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 명시된 기초자산의 매입

② 기금은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지침”에 투자제한 사항을 명시하여, 상기 투자가능 자산 중 일정조건 이하의 투자자산에는 투자를 제한하는 등 기금의 손실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제15조 (자산배분 원칙)

①자산배분은 중장기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기금의 중장기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반영하여 자산군의 상대적 비중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전략적 자산배분(안) 도출방법은 결과도출이 투명하고 여러 자산배분 시나리오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중심으로 평균-분산 최적화(Mean-Variance Optimization)모형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③기금의 자산배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자금수지 예측	· 연간자금수지 및 자금운용규모 예상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바탕으로 자금항목별 현금유출입 추정
단기자금 규모설정	· 기간별 적정유동성 산정 및 유동선 Target Level 설정 - 자금수지 및 과거 계획대비 실제 오차 반영 - 기간별 적정유동성 산정 · 단기자금 운용규모 설정
중장기자금 전략적 자산배분	· 투자자산별 기대수익률, 위험, 상관관계 추정 -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 Concensus 반영 · 자산배분 제약조건 충족 자산배분(안) 선정 - 목표수익률, ShortFall Risk, 허용위험한도(VaR) 등 · 최적화 기법을 통한 자산별 투자비중 결정 - Efficient Frontier 도출

전술적 허용범위 설정	· 중장기자금 투자비중 조정 허용범위 설정(±5% 이내) - 과거 투자자산 변동성, 정책적 배분비중 반영 - 분기, 월간 자산배분시 시장상황별 적용할 투자비중 조정범위를 정하여 운용의 일관성 유지

제16조(자산배분안)

①기금은 무위험 자산(정기예금 등), 주식, 채권 등 각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리스크(변동성) 그리고 상관계수를 기초로 효율적 프론티어상의 복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 포트폴리오 가운데 위험대비성과(예상수익률/표준편차)가 가장 높고, 신뢰수준이 높은 최적자산의 조합으로 기본포트폴리오를 결정한다.

② 2019년 자산배분(안) <개정 2014.7.14.> <개정 2017.06.02.> <개정 2019.12.11.>

[자산배분(안)]

구 분		금액(억원)	비중(%)	허용범위(%)
단기 자금	현금성자금	424	26.7	
	유동성자금	190	12.0	
단기자금 소계		614	38.7	±15
중장기 자금	확정금리	-	-	±10
	채권	515	32.5	±10
	국내주식	158	10.0	±7
	해외주식	-	-	
	대체투자	298	18.8	-10 ~ +5
중장기자금 소계		971	61.3	±15
총계(운용가능자금)		1,586	100.0	

③ 자산배분 조정(Rebalancing) <개정 2018.1.15>

1. 기금은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자산의 시가구성비를 허용위험한도(VaR 값) 범위 내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 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운용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 후 위원장이 결정한 범위 내에서 자산배분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2. 포트폴리오의 검증은 매년 실시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 제반 조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 재조정(Rebalancing)한다.

제8장 위험관리정책

제17조(위험의 정의)

①위험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예상치 못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②기금은 “리스크관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위험 종류별 관리방안)

① 시장위험(Market Risk)은 주가, 이자율,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투자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되는 위험으로서 Value at Risk(VaR)로 측정·관리하며, 투산자산별 허용위험의 수준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1. 주식 : 종목 및 업종별 분산투자 기준과 손실한도를 설정
2. 금리 : 종목 및 업종별 분산투자 기준, 듀레이션 기준, 총투자한도 및 손실한도를 설정
3. 환율 : 투자목적별 총 한도를 설정

②신용위험(Credit Risk)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원리금 등을 당초 약정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으로서 발행기관의 신용위험 및 거래기관의 신용위험은 거래대상 제한 및 총투자한도 설정 등을 통해 관리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채권의 경우 BBB+이상(부동산 담보권 및 보증 등이 있는 경우 BBB-이상), CP의 경우 A2-이상인 종목에만 투자할 수 있다.

③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은 첫째, 기금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집행을 원활히 못하는 위험이며, 둘째는 기금 보유자산의 시장 내 거래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지 못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거나 현금화되지 못할 가능성으로 정의하며, 기금의 유동성위험은 기간별 자금 수급의 예측 및 유동성 갭(Gap)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시장의 유동성 위험은 신용위험허용한도를 통해 관리한다.

④ 운영위험(Operation Risk)은 적절하지 않은 내부통제제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의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기금에 손실이 초래될 위험으로 정의하며,은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위하여 운용조직과 Back office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산운용담당자의 규정 준수여부 및 실물, 위탁자산 점검 등을 감사부서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제19조(위험관리 조직 및 보고체계)

①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자금운용에 관한 위험관리 전반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재무관리담당부서 <개정 2019.12.11.>

재무관리담당부서는 위험관리 실무조직으로서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독립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개정 2019.12.11.>

【 재무관리담당부서 】

구분	세부내용
관련근거	● 국가재정법 제77조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 자산운용지침 제8조 (자산운용조직)
기능	● 위험관리 실무조직으로 자금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 전담부서와 독립적인 부서로서 자금운용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금운용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
업무내용	● 실적배당상품의 월간 점검 ● 자금운용의 허용위험한도의 초과여부 점검 ● 금융기관 및 운용상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자금운용계획의 이행상황 등 정기 점검 실시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위험관리 및 대응조치)

① 위험관리 담당직원은 허용위험한도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며, 한도초과여부시 자산운용 담당직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상위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위험에 대한 위기상황을 3단계(정상, 주의, 위험)로 구분하며, 주의단계시 시장상황 및 한도소진율이 상향되는 원인 분석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위험단계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초과사유를 보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단계	구분
정상	허용위험한도의 70% 이하
주의	허용위험한도의 70% ~ 100%
위험	허용위험한도의 100% 이상

제9장 내부운용 및 외부운용

제21조(내부운용 및 외부운용 정책)

①기금은 내부 전문인력을 통한 내부운용(직접투자)과 외부 전문운용사 및 기획재정부 주관의 연기금 투자풀을 통한 외부운용(위탁투자)을 통하여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그러나 주식 및 채권 등에 대한 내부운용은 고도의 전문성과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러한 여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을 외부운용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외부운용은 사전에 수립된 위탁운용의 목표와 자산별 투자계획, 운용사에 대한 자금위탁계획, 운용사 선정에 관한 사항, 위탁투자계약 및 외부위탁투자지침 등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연간자산운용계획에 의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외부위탁기관 및 상품의 선정원칙)

①금융기관 및 상품선정 시 금융기관 및 상품의 선정기준 및 근거를 자산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문예진흥기금 금융기관선정지침”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활용한다.

②객관적인 데이터 및 근거확보를 위해 Pool 선정을 위한 정량평가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외부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방법)

① 제1금융권의 확정부상품 예탁대상인 은행은 연간선정기준으로 국내신용등급(25%), BIS자기자본비율(25%), 총자산규모(20%), 고정이하여신비율(15%), 총자산이익률(15%)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2금융권의 상품투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연간선정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20%), 자기자본비율(20%), 총자산이익률(15%), 부채비율(15%), 총자산규모(15%), 수익증권판매실적(15%) 등을 평가하며,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재무안정성(10%), 수익성(10%), 인력현황(30%), 운용규모(30%), 운용성과(1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위탁기관의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수익률 제고방안, 운용방법의 변경 요구 및 위탁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이 계약 등을 위반 시에는 즉시 해소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의 선정과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예술진흥기금 금융기관선정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24조(투자자산의 중도회수 및 재투자기준)

① 운용상품의 만기와는 별도로 해당 상품의 안정성 및 유동성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또는 다른 금융상품으로의 교체투자가 수익률제고를 위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상품을 중도에 해지/회수조치 할 수 있다.

② 이를 위하여 기금은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지침” 상 위탁펀드의 수익률 및 위험수준 등 운용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용수익률 저조 펀드 등에 대하여 관련기준에 의한 ‘주의관찰’, ‘경고’, ‘계약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운용상품이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기간 연장 또는 신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1. 자금수급에 따른 적정 투자기간
2. 포트폴리오의 자산별·만기별 가중
3. 허용위험한도
4. 금융기관별 예치한도
5. 운용상품의 수익률 등

제10장 성과평가

제25조 (성과평가 원칙)

①성과평가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산배분 등을 포함한 투자의사결정 주체의 권한을 명확히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성과평가는 단순히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을 측정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위험을 고려한 평가를 병행한다.

제26조(성과평가 주기 및 결과보고)

① 성과평가는 연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 단위로 위탁수익증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단, 위탁수익증권 평가 시 기금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개정 2013.8.2.>

② 평가결과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공시기준에 따라 외부에 공개한다.

제27조(성과평가 기준) <개정 2013.8.2.><개정 2015.1.19.>

①순자산가치(NAV)가 반영되는 시가수익률을 원칙으로 하며 시가수익률은 현금흐름에 대하여 조정된 시간가중수익률을 사용한다.

②상품별로 기준수익률을 설정하고, 확정금리상품에 대해서는 기준수익률대비 초과수익률 평가를, 실적배당상품에 대해서는 기준수익률대비 초과수익률 평가 및 위험을 고려한 평가(IR, Sharp비율 등) 그리고 상대적인 평가(동일유형상품 내 %순위)를 실시한다.

③기준수익률은 운용성과의 평가지표가 되는 수익률로서 자산배분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기준수익률의 설정원칙인 대표성, 적정성, 측정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④기금 전체의 기준수익률은 [∑ 자산군별 기준수익률×투자 비중]으로 한다.

【 자산군별 기준수익률 】

자금 구분	자산군		기준수익률
단기 자금	현금성자금		MMF 업계평균 수익률
	유동성자금	확정금리형	정기예금 6개월 ~ 1년 가중평균 수신금리
		실적배당형	KIS채권종합지수(6개월~1년)
중장기 자금	확정금리형		정기예금 1년~2년 가중평균 수신금리
	채권형		KIS채권종합지수(1~2년)
	주식형	국내	KOSPI(배당수익 포함)
		해외	MSCI ACWI
	대체		(5년평균, 실실GDP성장률+CPI)
전체			∑ (투자비중×자산군별 기준수익률)

※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의 기준수익률은 하위자산군별 기준수익률을 투자비중으로 가중평균한 수익률임.

제11장 감사 및 공시

①자산운용에 있어서는 내부의 감사부서에 의해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0.1.1.>

1. 연간자산운용계획의 이행상황
2. 자산운용 업무상의 위법 및 위규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3.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금의 운용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장 주식투자 시 의결권 행사행위준칙

기금은 주주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목적 외에 경영권 참여 등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다만, 간접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장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기금의 모든 자산운용담당자(이하 직원)는 국민의 재산인 기금자산의 수탁자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1. 직원은 관계법령, 기금운용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가로서의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원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직원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원은 투자를 행함에 있어 유가증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의와 판단으로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 등에 개인적 이해관계나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석이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직원은 기금 자산이 기금 사업수행을 위한 준비금임을 인식하고, 개인이나 소속 조직의 이익보다 기금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6. 직원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이 최대화 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 발생만을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